

# 주일본대사관 한국문화원 특별조사 결과

## □ 조사 개요

- 조사배경 : 국무조정실(공직복무관리관실)의 주일본 대사관 한국문화원(이하 “문화원”)의 공직기강 점검 결과, 미술품 관리 및 예산집행 부적정에 대한 점검사실 통보(‘16.3.8.)
- 조사자 : ♀♀♀ 사무관, ♂♂♂ 주무관
- 조사중점 : 미술품 관리실태 및 “다 같이 즐기는 한국식문화” 행사예산 집행 적정성 여부 등

## □ 특별조사 결과

### ○ 미술품 관리 부적정

- 재외문화원 미술품은 「외교부 미술품 관리 규정(이하 관리규정)」에 따라 관리이력, 위치, 사용자 등을 ‘미술품 관리대장’에 등재하여야 함에도 동경문화원은 관리규정 상의 ‘미술품 관리대장’을 사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미술품관리카드’를 사용하여 규정을 위반함
- 동경문화원은 공직기강 점검 직후 당시 관리하였던 ‘미술품관리카드’를 관리규정에 맞는 ‘미술품관리대장’으로 시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 ○ 『다 같이 즐기는 한국식문화』 행사예산 집행 부적정

- 문화원에서는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의 상차림과 떡 문화 등 한식을 알리기 위하여 「다 같이 즐기는 한국식문화」 기획전시회를 ‘15.4.10.~4.23.까지 문화원 갤러리에서 개최하고, 동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 한 바 있음.

-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할 때에는 재외공관 회계사무처리규정 제12조에 따라 현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동 규정 제14조는 관서운영경비 지급결의서는 영수증과 함께 월별로 편철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에서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때에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자등으로부터 영수증서 등을 수령하거나 사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지출증빙서류(적격서류)란 통상 한국 내에서 물품 취득 시 법인세법 제116조와 동법 시행령 158조, 시행규칙 79조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칭하나, 문화원에서는 상기 행사예산에 대한 경비지급 시, 한국 내에서 구입한 물품 등에 대한 지출증빙서류로 적격서류라 보기에는 어려운 영수증, 입금표 등으로 확인한 후 지급한 사실이 있음.
- 다만, 문화원에서는 행사종료(' 15.4.23) 후 경비지급을 위해 기획사(♠♠♠ 요리연구원)로 하여금 영수증 보완촉구와 이로 인해 문화원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대리 회계직공무원인 ◇◇◇의 결재로 대금지급(15.5.28.)이 이루어진 점. 행사결과보고서 상 13일간 진행된 행사기간 중 1,350여명이 관람하였고 다양한 부대행사 등에 대한 사진자료를 통해 영수증 관련 구입물품 등의 증거가 남은 점. 일본인 기획사가 일본 내 물품구입 관행상 한국 내 물품구입을 하였다는 점 등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

## □ 조치할 사항

- 주일본대사관 한국문화원은
  - ① 외교부 미술품 관리규정에 따라 보관중인 284점에 대해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미술품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문화원 관서운영경비 지급 시 국고금관리법령 및 재외공관 회계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지급될 수 있도록 관서운영경비 지급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